

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7월 7일 부천시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3년 7월 7일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105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(2003년7월11일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주차사업단장 우의제)

제안이유

○ 단독, 다세대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한 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설치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,

○ 공동주택(다세대주택 제외)을 지급대상에 추가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주차장 확보비율을 높이므로써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

주요골자

○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을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에서 공동주택(다세대 주택제외)을 포함하여 확대 조정함(안 제24 조제2호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<p>◦현재 단독, 다세대주택에만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공동주택에도 확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인가?</p> <p>◦공동주택도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에 어려움이 많아 조례개정시 신청 하는데가 많을것임. 보조금을 지원 받아 조정부분이나 놀이터등을 훼손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곳도 있을텐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?</p> <p>◦조례개정시 수혜를 받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 해보았는가?</p> <p>◦금번 조례개정에 상가주택도 포함해서 보조금을 지원 해야 한다고 보는데?</p> <p>◦상업용 건축물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차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며, 또한 상업용 건물의 특성상 영업이 끝나고 나면 점포주의 퇴근등으로 주차공간이 남을것이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건물(근린생활시설)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?</p>	<p>◦예</p> <p>◦법적으로 주차장 설치에 위배되지 않는 곳에만 보조금을 지급할것임.</p> <p>◦오정구 지역 일부와 원미구 역곡동 지역등 풍치지구 해제로 재건축시 건폐율이 20% 늘어 주차면수도 약 800면정도 늘어날것임.</p> <p>◦상가주택은 주택으로 분류되어 현행 조례로 지급되고 있음.</p> <p>◦상업용 건축물은 영업행위에 대한 보조 성격이 짙어 보조금 지급이 어렵다고 봄. 다만 전수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있을 경우 추후 개정요구 하겠음.</p>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 : 없 음
- 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- 없 음

7. 기타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59호
의결 년월일	2003. 7. 15 (제105회)

제출년월일 : 2003. 7. 3.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단독, 다세대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한 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설치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,
- 공동주택(다세대주택 제외)을 지급대상에 추가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주차장 확보비율을 높이므로써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을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에서 공동주택(다세대주택 제외)을 포함하여 확대 조정함
(안 제24조제2호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공동주택(다세대주택 제외)의 공지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4조(보조의 대상)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24조(보조의 대상)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공동주택(다세대주택 제외)의 공지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</u></p> <p>3. (중전의 제2호와 같음)</p>